

목포시가로수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150 |
|----------|-----|

1. 개정이유

-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
-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업무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여
- 특히 기존의 목포시가로수관리조례는 전문 제1조 ~ 제 10조로 현재 제정되어 현실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아 금번 개정조례안은 제1장 ~ 제4장, 제1조 ~ 제 26조로 세분되어 보다 가로수관리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.

2. 주요내용

-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가로수조성 및 관리위원회 설치(안 제5조)
- 가로수의 수종선정과 식재위치, 식재기준, 식재시기 등 가로수조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6조 ~ 제10조)
- 가로수의 개선 및 보식, 가지치기·이식과 병충해의 방제, 외과수술, 지형과 토양보호, 주민참여 등 가로수 관리내용을 규정(안 제12조 ~ 제19조)
- 식재와 관리의 민간 위탁(안 제20조)
- 손케자 부담금(안 제21조)
- 원인자 부담금(안 제22조)
-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(안 제25조)

3. 주요내용 비교 : 개정전 조례와 비교

| 개 정 안 | 현 행 | 검토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제1조 (목적) | 제1조 (목적) | · 내용 유사 |
| 제2조 (적용범위) | | · 신 설 |
| 제3조 (정의) - 용어의 정의 | | · 신 설 |
| 제4조 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| | · 증보 개정 |
| 제5조 (가로수 조성 및 관리위원회) | | · 신 설 |
| 제6조 (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) | | · 신 설 |
| 제7조 (식재위치) | | · 신 설 |
| 제8조 (식재기준) | | · 신 설 |
| 제9조 (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) | | · 신 설 |
| 제10조 (식재시기) | | · 신 설 |

| 개 정 안 | 현 행 | 검토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
| 제11조 (식재 및 관련시설물 사전협의) | | · 신 설 |
| 제12조 (갱신 및 보식) | 제4조 (가로수관리) | · 흡수개정·증보 개정방식 |
| 제13조 (가지치기·이식) | | · 신 설 |
| 제14조 (병충해의 방제) | 제7조 (시민관리제 실시) | · 신 설 |
| 제15조 (외과수술 등) | | · 증보 개정 |
| 제16조 (지형과 토양보호) | | · 신 설 |
| 제17조 (관리시설물) | | · 신 설 |
| 제18조 (점검) | | · 신 설 |
| 제19조 (시민참여 등) | 제7조 (시민관리제 실시) | · 흡수·보완 개정 |
| 제20조 (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) | 제8조 (가로수 관리의 위탁) | · 흡수·보완 개정 |
| 제21조 (손케자부담금) | 제5조 (손케자부담금 징수 등) 제6조 (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) | · 흡수·보완 개정 |
| 제22조 (원인자부담금) | " | · 흡수·보완 개정 |
| 제23조 (부담금의 강제징수) | " | · 흡수·보완 개정 |
| 제24조 (관리청간의 협의) | | · 신 설 |
| 제25조 (관리대장 강제징수) | 제9조 (관리대장 작성 및 점검) | · 개 정 |

3. 검토의견

- 기존(현행)의 목포시가로수관리조례가 2002. 8. 19. 조례 제2134호 전문 제1조 ~ 제10조로 간단하게 편제된 내용인바, 미흡한 위 조례로는 효율적인 가로수의 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없어
- 이에 따른 개정 조례는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신설되는 조항

으로 전부 개정하는 형식이 되었음.

-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
 - ① 가로수의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
 - ② 시민참여의 방안으로 「가로수조성 및 관리위원회」
 - ③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
 - ④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
 - ⑤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
 - ⑥ 손케자·원인자의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내용으로 신설 및 기존의 조례를 흡수·보완 개정하는 내용 인바

- 효율적·체계적·지속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다만, 안 제4조 제2항의 가로수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을 매 10년으로 변경함을 검토하여야겠으며 이에 대한 사유는 가로수 기본계획도 도시계획 또는 도로시설 계획 등과 관련되어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을 감안하여야겠으며

- 또한, 안 제4조 제3항의 가로수 기본계획 입안시 주민공감 공고 절차 조항은 가로수 식재 대상지역 상가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적기 식재가 일실할 우려가 있어 「주민공람 공고」 절차 조항은 삭제할 타당한 사유가 된다고 사료됨.